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07949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4. 24.

판결 선고2018. 5.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76,029원 및 그 중 86,659,158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70,567,165원의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70,567,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에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보증서번호 : D

보증일 : 2014. 12. 12.

보증원금 : 90,000,000원 (그 후 85,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 2015. 12. 11. (그 후 2016. 12. 9.로 변경)

대출과목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대출은행 : 국민은행 고잔지점

2)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 피고 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3) 피고 회사는 보증일 무렵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회사는 2016. 12. 10. 원금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4. 6. 국민은행에 86,659,158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채권보전비용 대지급금 잔액은 323,551원이다.

3)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면 493,320원 $[=85,500,000\text{원} \times 117/365 (2016. 12. 10. \sim 2017. 4. 5.) \times 1.8\%]$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76,029원(= 대위변제금 86,659,158원 + 대지급금 323,551원 + 위약금 493,32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86,659,15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4. 6.부터 2017. 5. 30.(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약정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6. 11. 21. 자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대금 1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뒤인 2016.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 금융회사에만 합계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한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0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B)가 경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이후인 2016. 12. 21.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9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C)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종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89,432,835원이었고, 2017. 8. 2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C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불과 19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액 합계 약 15억 원 이상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 및 위 매매계약의 시기,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신분관계 및 피고 B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로서도 위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여부

1) 피고 C는, 자신의 딸의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인 F의 소개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매수하였을 뿐 피고 B과는 원래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이나 그 밖에 피고 C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 C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② 피고 C는 2016.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한 달 후인 2016. 12.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종전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B)를

말소하였는데,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종전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승계하는 것이 보다 더 간편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등기과정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고 C는 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는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6. 12. 21. 말소하였는데 그와 같은 거래를 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60,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90,00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수수되었다는 나머지 70,000,000원(= 160,000,000원 - 90,000,000원) 중 그 수수내역이 금융자료(을 제3, 4호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은 40,000,000원에 불과하다.

④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동기가 농협 서수원지점에 근무하는 자신의 딸이 안산지점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어서 그의 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지만, 피고 C의 딸은 실제로는 안산지점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발령이 나지 않은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8. 22. 기준 시가는 16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시가평가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시가 160,000,000원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었다가 그 후에 말소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89,432,835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70,567,165원(=
160,000,000원 - 89,432,835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위 인정된 가액배상금 70,567,1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 70,567,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동국

별지